

감사위원회를 위한

Trend Report 2021 Vol.1

202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삼일회계법인



2021¹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

지난 5월 31일까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총 215개² 기업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2020년의 211개사와 비교할 때 4개사가 증가한 수치이다. 215개사 중 금융사가 40개사, 비금융사가 175개사이며, 그 외에 12개사가 자발적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였다.

2021년에는 ESG의 중요성이 급부상하였고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더 이상 법적인 의무에 따라 단순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시하는 실무에 그칠 사항이 아니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고민하여 장기적인 기업가치 측면에서 회사에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찾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민하게 대응해 가야 할 주제이다.

본고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상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주목해야 할 추세와 시사점을 검토한다.³

-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은 직전 사업년도 말일로서, 본고는 분석을 위해 2020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확인하였다.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은 보고서에 첨부되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의 작성 기준시점을 보고서 제출일 현재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제목을 '202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분석'으로 정하였다.
- 2 한국거래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한 215개사의 시가총액 합계는 약 1,677조원으로 코스피시장 전체 시가총액(1,981조원)의 약 84.6%를 차지한다고 한다.
- 3 분석 대상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공시해야 하는 대규모 상장기업 중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한정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를 공시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갈음한다. 그런데 지배구조 연차 보고서에는 핵심지표 준수 현황이 포함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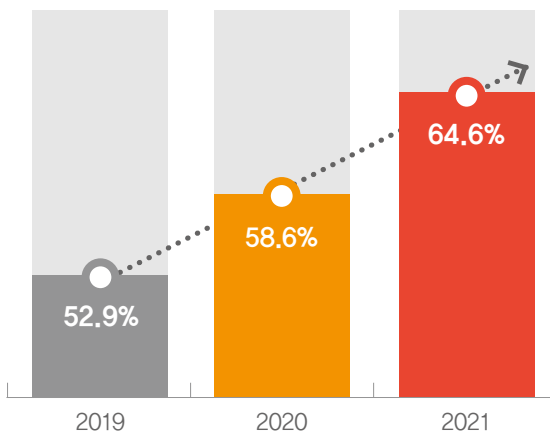
Contents

1. Summary	3
2. 핵심지표 준수현황 분석	4
3. 별첨	11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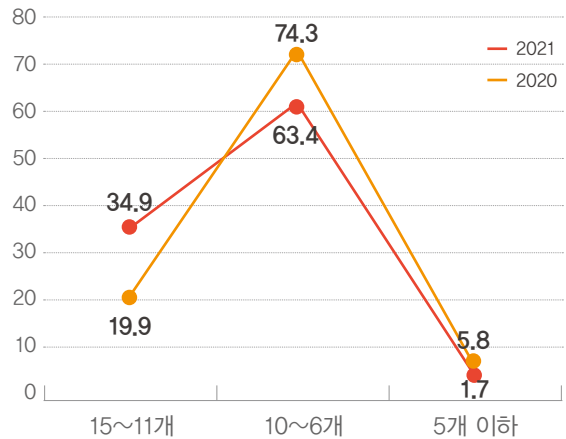
① 3년간 평균 준수율 추이

2021년(2020년)에 전년 대비 **6% 포인트**
(5.7% 포인트) 개선



② 준수 현황별 회사 분포

15개 핵심지표 중 11개 이상 준수한 회사 비율이
15% 포인트 증가



③ 준수율이 높은 지표 Top 5

준수율(%)	핵심지표 항목
100%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97%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5%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3%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88%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④ 준수율이 낮은 지표 To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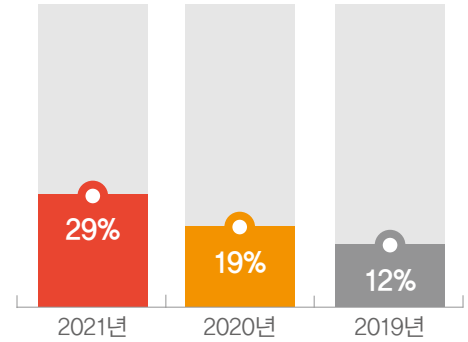
준수율(%)	핵심지표 항목
5%	⑧ 집중투표제 채택
29%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30%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43%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8%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주주

1.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다른 핵심지표에 비해 동 지표의 준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로 주주총회 소집공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정보를 실무적으로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해석된다.⁴ 소집공고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 핵심지표를 준수했다고 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⁵은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할 것을 요구하므로, 일반적으로 법률 준수를 위한 기한인 2주에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20년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총 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게 되어 실무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늘어난 것도 동 지표의 준수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 추정할 수 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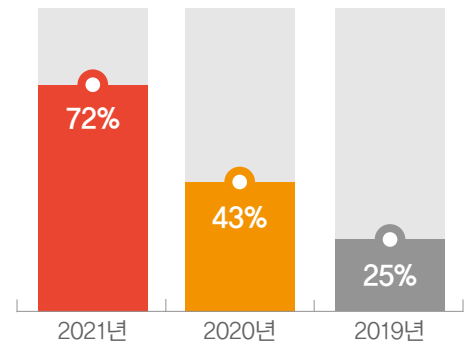


2.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개정된 상법은 전자투표 실시로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시 결의요건을 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시 출석한 주주 과반수로 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새도보팅(shadow voting) 폐지로 인해 정족수 미달의 어려움을 겪었던 회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전자투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2021년 정기 주총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⁷ 여기에는 전자투표제의 활성화를 위해, 정기 주총 기간에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하고, 이를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1년에는 개정 상법과 코로나19에 대응한 노력이 준수율을 30% 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전체 상장회사 중 2021년 정기주총에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총 1,253개 사(58.8%)이다.⁸ 본고의 분석 대상인 대규모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전체 상장회사에 비해 전자투표 제도를 실시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4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58호 서식>

5 상법 제363조 제1항, 제542조의4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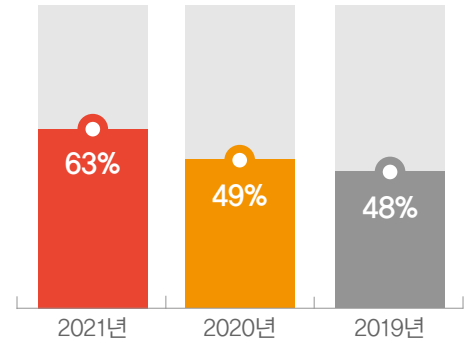
6 단,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전자문서로 발송하거나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7 금융위원회 등,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2021.1.22

8 경제개혁연구소, 2021년 정기주총 전자투표·온라인주주총회 도입 현황, 2021.4.15

3.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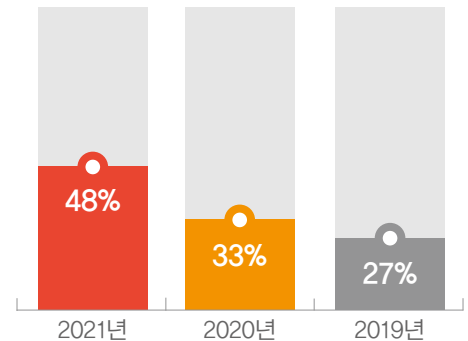
동 지표의 준수율은 지난 2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주총회 집중일이라 함은 매년 초 한 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공표하는 주주총회 집중일을 의미한다.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은 주총 집중예상일을 연도별로 3개씩 선정하여 공지하고, 이를 제외한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협회에 통보한 회사에 인센티브(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등)를 부여한다. 반면, 주총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거래소에 신고해야 한다.



전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주주총회 집중일이 아닌 날짜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비율이 2021년 49.8%, 2020년 52.9%, 2019년 49.3%로 개선 양상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2020년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총 소집공고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함께 제공하게 되면서, 주총이 3월말에 물리게 된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

4.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하였다.

배당 관련 핵심지표의 준수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개선을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배당정책이란 단순히 당기의 배당금 지급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 실행기준과 방향을 의미하며, 배당실시 계획은 당기의 배당실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또한, 통지는 공시, 주주 개별 통지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IR, 홈페이지 게시 등 주주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수행된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69%가 현금배당을 실시하였고, 5년 연속 현금배당을 실시한 법인도 전체 현금배당 법인의 77%에 해당하는 등 배당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반해 관련 정보의 커뮤니케이션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⁹

또한, 사업보고서에는 '배당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며 배당수준의 방향성,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된 재무지표 산출방법 등을 포함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63%에 달하는 회사의 공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충실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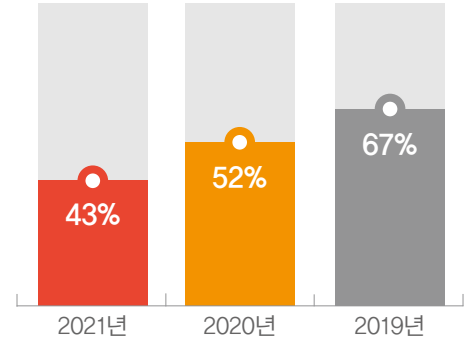
9 한국거래소, 최근 5년간 현금배당 법인의 시가배당률, 배당성향 및 주가등락률 현황, 2020.4.24

10 금융감독원,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결과, 2021.6.2

이사회

5.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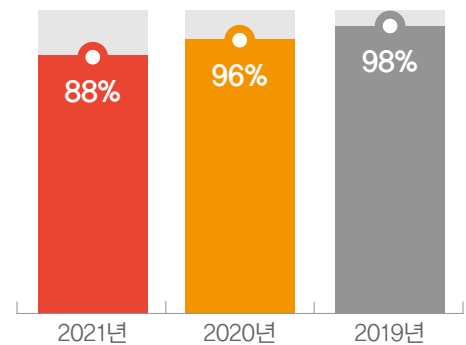
2020년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에 관한 사항이 보다 구체화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은 단순히 상법상 대표이사 선임절차의 준수 여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집단)의 구성 또는 선정을 위한 기준, 교육, 평가, 정기적 개선보완 등이 실제 이행되는 경우에만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만 이사회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며,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이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을 구체화함에 따라 준수 여부의 판단이 명확해짐과 동시에 해당 요건을 모두 준수하기 어려워진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명문화된 승계 정책이 없어 미준수로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다만, 명문화한 정책은 없으나 내부적인 절차는 갖추고 있다고 기재한 경우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특성상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이 실무적으로 생소하여, 각 회사에 적합한 승계정책을 단기간에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6. 내부통제정책을 마련 및 운영하고 있다.

2020년 개정 가이드라인은 내부통제정책에 관한 세부 원칙을 별도로 분리하고 설명 대상 항목을 상세히 열거하여 기재 누락을 방지하였다.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됨에 따라 준수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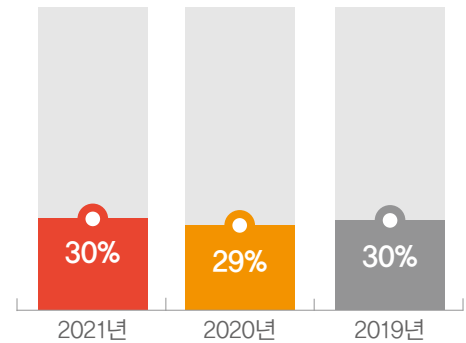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회사는 내부통제정책 전반에 관하여 (i) 리스크의 인식, 관리 등 리스크관리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ii)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를 위한 정책 마련여부 및 운영현황, (iii) 그 외 추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통제정책이 있는 경우 주요 내용 및 운영현황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

또한, 동 핵심지표를 준수했다고 표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모두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에 관한 정책은 갖추고 있지만 리스크관리에 관한 명문화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아 미준수로 표시한 경우가 많았다.

7.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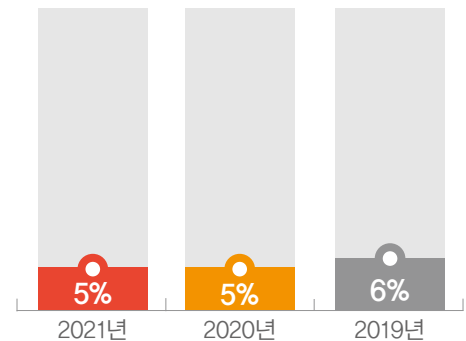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고 있는 회사의 비율은 3년간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 것이 모든 기업에 최선이 아닐 수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가 권장되고 있다. 미준수한 사례 중에는 회사의 특성상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지 않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었고, 향후 분리를 위해 정관과 이사회 규정을 개정할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다. 만약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면 선임 사외이사를 두어 의장 역할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게 할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8.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목적을 목적으로 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을 때,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상법 제382조의2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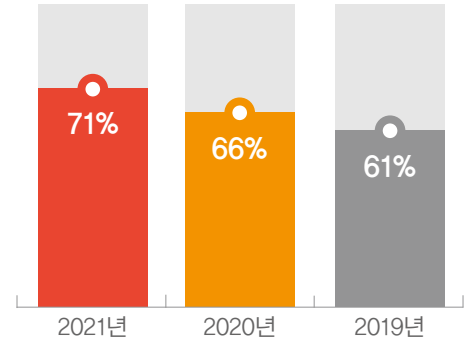


집중투표의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82조의2제3항). 그리고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상법 제382조의2제4항).

집중투표제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원칙으로 하는 상법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며,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헤지펀드 등 투기 세력에 의한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제도이다.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의 준수율을 보이고 있다.

9.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동 지표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 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과거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거나 현재 혐의가 있는 자가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현황을 설명하도록 한다. 동 핵심지표를 준수한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임원의 현재 존재 여부가 아닌 이러한 임원의 선임을 금지하는 명시적 기준 또는 절차의 수립 여부 및 실제 부존재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고, 판단 범위에는 ‘미등기 임원’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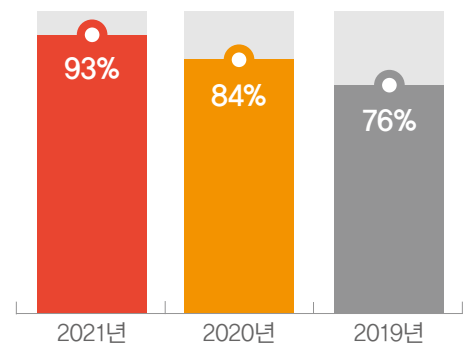


동 지표는 3년간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변화 폭이 작다. 거래소가 2020년에 개정 가이드라인과 함께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세부원칙별 모범사례’에는 동 지표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공시 모범사례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당사에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원관리제도에 의거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임원 선임 및 보임에 대한 검증 절차를 운영하여 임원의 역량과 리더십 등 해당 직책 수행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외부 영입 임원의 경우, 임원 선임 전 자체 검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 선임 이후에는 회사의 윤리규범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 임원 징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책무를 다하도록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과거 횡령, 배임 등의 판결을 받은 이사가 선임 되어있지 않습니다.”

10.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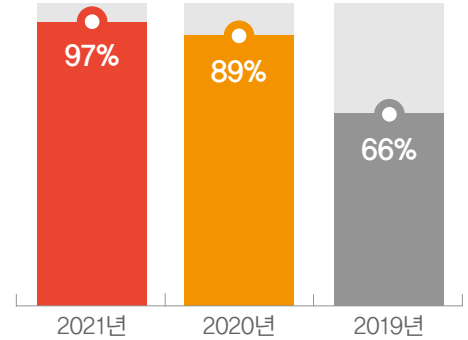
2020년 1월 상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특정 회사의 계열사에서 퇴직한지 3년(기존 2년)이 되지 않은 자는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사외이사로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었다(상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즉, 법적인 요구사항이 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 전에 재임 중인 장기재직 사외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100%의 준수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기구

11. 내부감사기구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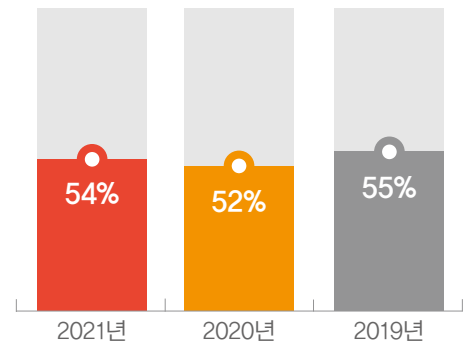
동 지표의 준수율은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97%라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교육 제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교육 주제 선정이나 실시 방식에 대한 실무가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가이드라인이 단순히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을 설명한 것은 교육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므로, 회사는 연간 교육프로그램의 주제가 적절하고 충분한지 검토하고,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

12.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를 설치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역할을 위해 내부감사부서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표의 준수율이 가시적인 개선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준수'에 대한 해석이 보다 엄격해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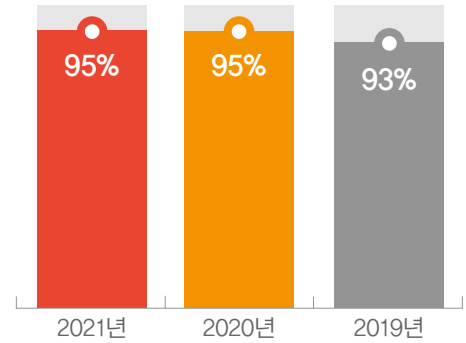


2020년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독립적인'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되었다. 즉,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인사 평가 및 이동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장)의 동의 등을 얻도록 하여 경영진이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또한,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란, 명칭을 불문하고 관련 법 및 내부 규정상 감사위원회 또는 상급 감사의 업무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며, 경영진단 등을 수행하는 부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준수 사례에는 전담 조직이 없는 경우와 전담 조직은 있으나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다.

13.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가 존재한다.

2020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동 지표의 준수 기준을 상법과 일관되게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정하였다.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기업의 감사위원회에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내부감사기구로 감사가 설치된 회사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미준수로 기재하였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모든 회사는 동 지표를 준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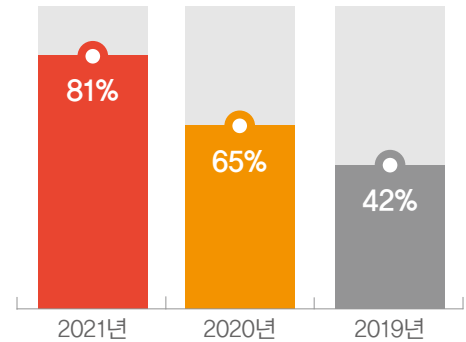


14.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지표의 준수율은 3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81%로 2년 전에 비해 준수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미준수한 회사에는 매분기마다 이러한 회의를 갖지 못했거나, 모든 회의에 임원이 참석하는 경우 등이 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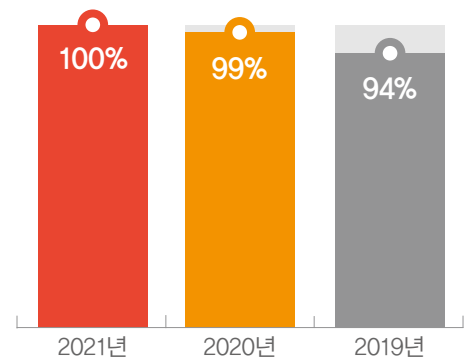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갖는 회의는 기업의 문화, 재무보고 이슈, 기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이다. 실무적으로 공식적인 감사위원회 회의 직후에 이러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회사는 사전에 감사위원회 회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외부감사인과의 일정 논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동 회의에는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감사위원회 업무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겸하는 임직원(예를 들어, 재무보고 관련 부서의 임직원)의 참석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5.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동 지표는 이미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었으며, 2021년에는 모든 회사가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석 대상 회사들의 내부감사기구가 모든 경영상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규정 등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내부규범에 정보 접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응해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별첨

** 3년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구분	핵심지표	2021 (175개사)	2020 (171개사)	2019 (161개사)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29%	19%	12%
	② 전자투표 실시	72%	43%	25%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63%	49%	48%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48%	33%	27%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43%	52%	67%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88%	96%	98%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30%	29%	30%
	⑧ 집중투표제 채택	5%	5%	6%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71%	66%	61%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3%	84%	76%

구분	핵심지표	2021 (175개사)	2020 (171개사)	2019 (161개사)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97%	89%	66%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54%	52%	55%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95%	95%	93%
	⑭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81%	65%	42%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100%	99%	94%

Contacts

이 용 재 파트너
02-709-0423
yong-jae.lee@pwc.com

김 재 윤 파트너
02-3781-3423
jae-yoon.kim@pwc.com

하 미 혜 연구위원
02-709-8599
mihye.ha@pwc.com

acc.samil.com

S/N: 2106A-RP-010

© 2021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